

建築法規 問題選 (3)

韓 鼎 變

(韓國住宅銀行 技術部長)

(問) 1. 다음 記述中 建築法規上 옳은 것에는 ○ 표, 틀리는 것에는 × 표를 하라.

- 1) 2층 벽돌조의 건축물은 構造計算에 의하여 安全性을 확인하여야 한다.
- 2) 延面積이 $250m^2$ 인 3층의 木造建築物은 構造計算에 의하여 安全性을 확인하여야 한다.
- 3) 처마높이 9m의 건축물은 主要構造部를 벽돌조 또는 콘크리트 블록조로 할 수 없다.
- 4) 기초에 사용하는 나무말뚝은 常水面上에 다야 한다.
- 5) 기와는 처마 부분에서는 2열 이상을 장마다 銅線 또는 鐵線 및 끈등으로 개판에 繫結하여야 한다.
- 6) 組積造인 耐力壁의 기초는 그 밑받침을 철근콘크리트 또는 무근콘크리트로 하고 그 상부층은 최하층 바닥면까지는 그 두께를 최하층 벽두께보다 크게 하여야 한다.
- 7) 組積造의 내력벽의 높이는 4m를 넘을 수 없다.
- 8) 組積造의 내력벽은 그 組積材의 종류에 따라 벽 높이에 대한 벽두께의 규제가 다르다.
- 9) 組積造의 간벽의 두께는 어떤 경우라도 10m 이상이면 된다.
- 10) 土圧을 받는 높이 2.4m의 지하실외벽(내력벽)은 組積造로 해서는 아니된다
- 11) 組積造의 二重壁의 두께는 중간공간의 폭을 제외한 실제 벽두께의 합계로 계산한다.

12) 2층인 組積造 건축물의 1층 및 2층 내력벽 위에는 벽두께의 1.5배 이상의 춤을 가진 철골콘크리트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의 와량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組積造인 벽에서 상하一直線上에 있는 開口部의 상호간 수직거리는 90cm 이상 있어야 한다.

14) 組積造인 벽에서 각층마다 開口部 상호간의 수평거리는 어떤 경우라도 그 벽두께의 2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5) 높이 2m의 벽돌조의 담의 두께는 20cm로 하여야 한다.

16) 補強콘크리트블록조인 耐力壁의 기초중 밑반침부분은 철근콘크리트로 하여야 한다.

17) 補強콘크리트 블록조의 耐力壁의 두께는 구조내력상 주요한 지점 간의 수평거리의 $\frac{1}{6}$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8) 補強콘크리트블록조의 세로철근의 양단은 각자 그 철근 지름의 35배 이상을 기초 밑받침 부분이나 와량 또는 바닥판에 정착 시켜야 한다.

19) 補強콘크리트블록조의 최상층의 내력벽위에 철근콘크리트조의 지붕판이 있을 경우에는 와량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20) 補強콘크리트블록조의 담의 내부에는 가로세로 80cm 간격으로 지름 9mm 이상의 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問) II 다음 각問의 수자나 記述中에서 건축법규상 옳은 것을 하나풀라 ○표를 하라.

- 1) 木造建築物의 토대를 기초에 緊結하지 안해 되는 단층건축물의 최대연면적은?
 a) $10m^2$ b) $30m^2$ c) $50m^2$ d) $100m^2$
- 2) 구조내력상 주요한 기둥의 소경이 이에 접하는 구조내력상 주요한 橫架材(토대·밀등장이, 충도리, 보, 도리등)의 상호간 중심거리에 대한 최소비율을 정하는데 관계 없는 것은?
 a) 건축물의 용도 b) 층별
 c) 지붕재료 d) 목재의 종류
- 3) 木造 建築物에서 引張力を 부담하는 목재 가새의 최소단면적은 이에 接하는 기둥의 단면적의
 a) $\frac{1}{3}$ b) $\frac{1}{4}$ c) $\frac{1}{5}$ d) $\frac{1}{6}$
- 4) 木造의 骨構를 둘붙임으로 죄울 때 지표면상 1m를 넘는 부분의 불임돌의 최대 두께는...?
 a) 3cm b) 5cm c) 6cm d) 10cm
- 5) 組積造의 물탈 배합비로서 틀린 것은...?
- | | | |
|--------------|----|----|
| 시멘트 | 石灰 | 모래 |
| a) 1 : 0 : 3 | | |
| b) 1 : 1 : 3 | | |
| c) 1 : 2 : 5 | | |
- 6) 조적조의 耐力壁의 최대길이는...?
 a) 5m b) 10m c) 12m d) 15m
- 7) 耐力壁의 두께를 규제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a) 건축물의 처마높이 b) 벽의 높이
 c) 벽의 길이 d) 층수
- 8) 組積造建築物의 각층의 对隣壁으로 구획된 각壁에 설치 할 수 있는 開口部의 폭의 합계의 최대한도는 그 벽의 길이의
 a) $\frac{1}{2}$ b) $\frac{1}{3}$ c) $\frac{1}{4}$ d) $\frac{1}{5}$
- 9) 組積造에서 철근콘크리트造의 웃인방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開口部의 최대폭은
 a) 1.5m b) 1.8m c) 2.0m d) 2.1m
- 10) 組積造인 벽에 설치 할 수 있는 가로 흈의 최대길이는...?
 a) 1m b) 2m c) 3m d) 4m
- 11) 補強콘크리트블록조의 耐力壁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최대바닥면적은
 a) $60m^2$ b) $80m^2$ c) $100m^2$ d) $120m^2$
- 12) 補強콘크리트블록조인 耐力壁의 최소두께는...?
 a) 12cm b) 15cm c) 18cm d) 20cm
- 13) 補強콘크리트블록조의 耐力壁의 끝부분이나 벽의 모서리 부분에 배치하여야 하는 철근의 최소지름은...?
 a) 6mm b) 9mm c) 12mm d) 16mm
- 14) 補強콘크리트블록조의 耐力壁에 배치하는 보강 철근의 최대간격은...?
 a) 60cm b) 80cm c) 90cm d) 100cm
- 15) 높이 2m의 補強콘크리트블록조의 최소 두께는...?
 a) 10cm b) 15cm c) 20cm

正 答

(問) I

- 1) ○(現実적으로不合理하나 建築法 第5條 및 第10條에 이같이 규정하고 있다)
- 2) ○(1)문과同一 3)○(9m 이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9m도 포함된다) 4)X 5)
 ○ 6)○(개정 시행령에서 조적조의 기초를 최하층의 바닥면이하로 규정하였으며 밀반침 상부 기초부분은 조적 또는 콘크리트의 구별없이 최 하층 벽두께에다 그 두께의 %를 더한 것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7) X 8) ○ 9) X 10) X 11) X
 12)○ (시행령 제44조의 조문에는 철골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로 되어있으나 철골조는 誤記로 생각됨). 13) X 14) X 15) X 16)○ 17)○ 18) X 19)○ 20)○

(問) II

- 1) c 2) d 3) c 4) b 5) c 6) b 7) a 8) a 9) b 10) c 11) b 12) b 13) c 14
 b 15) a